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457
------	------

2021. 06. 21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7일, 김광수 의원 외 28명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06.2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광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신용악화를 방지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추진 배경

-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, 특별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.
- 이러한 정책적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 상황 복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- 특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·폐업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,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)의 경우 보증업체 중 10.9%가 휴·폐업하였으며, 2019년 말 대비 4.3%포인트¹⁾ 증가하였음.
-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.

다. ‘개인’ 을 포함한 보증대상의 확대(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)

- 개정안은 신용보증의 대상을 담보력이 부족한 “소기업·소상공인” 에서, 재단이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“개인” 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“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”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“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”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<u>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개인</u>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</p>	<p>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</p>

1)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19년 12월말 기준 보증기업 대비 폐업률은 6.6%로, 2021년 4월말 (10.9%)과 폐업률만 비교하였을 때, 4.3%포인트 증가하였음.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(이하 “법”)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“개인” 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신용도 및 소득, 재산 등이 중소기업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- 중소기업부 장관의 고시는 현재 부재한 상태로, 입법예고(6.8.~6.28.) 중인 「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지원 대상 제정(안)」에서는 ▶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자, ▶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%이거나 연간 소득 8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[참고자료 1].
-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면서, 부채차감 후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음.
- 정부는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「법 시행령 개정령안」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, 6월말 국무회의 심의²⁾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[참고자료 2].
- 정부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프로그램(가칭 “브릿지보증”)을 신설하고, 보조금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감안할 때, 국무회의 심의부터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.
- 법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재단은 “개인”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

2) 6.17.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으며, 6.21.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.

수 있으며, 기존에 사업자 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.

-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으로 320억원³⁾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.
 - 운용배수 5배⁴⁾ 적용 시 1,600억원까지 브릿지보증이 가능해 약 5,300명⁵⁾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음.
- 따라서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입법·정책적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개인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, 전원찬성)

3) 국비 80억, 시비 240억

4)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브릿지 보증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5배 내외의 운용배수로 관리하라고 권고하였음. 320억원 × 5배 = 1600억원

5) 현재 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은 약 3,000만원으로 산정되며, 공급액 1,600억 ÷ 평균 보증금액 3,000만원 = 약 5,300여명

Ⅵ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김광수, 권수정, 김경영,
김인호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서윤기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이병도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한기영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개인을 말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”</u>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<u>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”</u>이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<u>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개인</u>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신용보증 대상)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,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</u>(이하 “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</p>

문서번호

2021051800000022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기획경제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5.18

회신일 : 2021.05.24

내용문의 : 02-2180-7943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(신용보증 대상)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5조(신용보증 대상)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3호의 개인을 추가함에 따라 개인(폐업자)에 대한 한시적 보증에 따른 신용보증 채원 출연

나. 전제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개인보증 전환을 통해 보증을 유지시켜 주는 한시적 정부추경('21.3.25) 매칭사업(정부 1 : 서울시 3)으로 2021년만 출연금 소요(단, 사업기간은 '21.7월~'22.12월임)

다. 추계기간

- 한시적 정부추경 매칭사업으로 2021년만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24,0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개인(폐업자) 보증 (안 제5조)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	소계(b)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□ 총 비용(b-a)		24,000,000	-	-	-	-	-	24,000,0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당관	조도형
사업평가팀장	이정수
예산분석관	박주용
	☎ 02-2180-7943
	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(신용보증 대상)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개인(폐업자) 보증 = 24,000,000천원
 = 개인(폐업자) 보증 출연금×1년
 = 24,000,000천원×1년

※ 개인(폐업자) 보증 출연금 산출 내역

○ 개인(폐업자) 보증 대상 및 수요 예측			
- '20년 일시상환 대출보증 규모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이용업체 평균 폐업률(10%) 고려시, 개인(폐업자) 보증공급 규모 1,608억원으로 예상			
'20년 일시상환 대출보증 잔액		'20년 말 기준 재단 이용업체 폐업률 (B)	브릿지 보증 예상 공급액 (A×B)
건수	금액(A)		
61,638건	16,080억원	10%	1,608억원
- 정부 추경시 산정한 운용배수(5배) 기준으로 출연금 편성 시, 총 필요출연금은 320억원 ※ 1,608억원/5 = 320억원			
- 서울시(3):정부(1) 매칭, 국비 80억 한도에 따라 시비(240억원) , 국비(80억원) 편성			

※ [참고]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'개인(폐업자) 보증 관련 예산 소요액 산출내역서' 참조